

회 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의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

제3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소집시기) ①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 정회원 1/10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5조(소집) ① 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의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총회 개최일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명의로 소집한다.

제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임원의 선출
6. 학회의 해산, 합병 및 분할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제7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연장자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개회) 의장은 총회의 의사 정족수에 대한 성원보고를 하고 개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의 및 의결) ① 총회의 의사는 정회원(위임장 포함)의 1/10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학회를 해산,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 1/5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학회의 정회원은 각각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1조(의안설명) 총회의 의안은 제안자가 제안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에 따라 제3자 또는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 상정) 의안은 총회소집 시 미리 통지한 의제에 한하여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제외 발언 금지) 의장은 의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의제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동의)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5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다시 동 회의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6조(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하고자할 때에는 표결할 의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7조(표결방법) ① 의장은 표결방법으로서 거수, 기립 및 투표 중에서 회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 ①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감표위원을 정회원 중에서 2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감표위원은 투표의 공정을 위하여 출석 회원 수를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투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제19조(개표) ① 투표가 완료된 때에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감표위원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개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출석 회원 수와 투표수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감표위원으로 하여금 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개표결과 선포)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록) ① 의장은 총회 폐회 전에 의사록에 서명 날인할 이사 2명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제1항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총회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출석회원의 수
4. 부의 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표결 결과
5. 총회 전반적인 진행상황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이 사 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의 재적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24조(개의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장)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감사의 의견 개진)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7조(직원의 출석)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회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의 승인
4. 임원보선
5.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의 임명
6.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동의
7. 예산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를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회장단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년 8월 29일